

2022년도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의료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응시자격

「의료법」 제5조, 동법 부칙(법률 제8366호, 2007.4.11.) 제9조 또는 동법 부칙(법률 제11252호, 2012.2.1.) 제2조, 동법 부칙(법률 제16555호, 2019.8.27.)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그 졸업 예정시기에 해당 학위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단,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요건(학위등록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상반기 시험일정 등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응시수수료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예정일	시험장소
<인터넷접수> 2021. 1. 13.(수) 09:00 ~ 1. 14.(목) 18:00 ※ 방문접수 없음	620,000원	2021. 1. 23.(토) ~ 2. 18.(목) ※ 20일간	2021. 2. 22.(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실기시험 A·B·C센터)

-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일자는 무작위 배정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시험기간은 실제 접수결과(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 주소 및 교통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서울 광진구 자양로 4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4번 출구에서 잠실대교 북단방향 도보 15분)

3 응시원서 접수 등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www.kuksiwon.or.kr) 접수

※ 인터넷접수만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하지 않음

구분	인터넷 접수
접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1. 13.(수) 09:00 ~ 1. 14.(목) 18:00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 2021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소속대학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는 자만 접수 가능함(제85회 의사 국가시험 기등록자 유효)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www.kuksiwon.or.kr)
응시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0,000원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가상계좌 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함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 부담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함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파일 : 276×354픽셀 이상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 * 사진 스캔 시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

○ 접수 관련 문의

- 전화 : 고객센터 1544-4244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원서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를 접수 시 응시자격 확인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자격 확인 미비에 따른 불이익(응시결격으로 인한 합격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보건 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관리 지침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후 7일 이내(환불요율 100%)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100% 환불기간 경과 후부터 시험일 5일 전 까지(환불요율 50%)는 방문, 우편 및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환불 관련 문의 : 전화 1544-4244

다.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다음의 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법정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정상 납부한 후 감면신청 및 서류 확인을 통해 감면대상자로 확인된 자에 한하여 전액 환불합니다.
-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방법 및 기간, 제출서류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기간 : 2021. 1. 13.(수) ~ 1. 21.(목)

4 시험방법 등

가. 시험방법

- 응시자는 정해진 시험 시작 및 종료 신호에 따라 12개의 시험실을 이동하면서 각 시험실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 * 각 시험실에서 퇴실한 응시자는 해당 시험실에 재입실 불가
- 평가자는 응시자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합니다.

나. 문항유형 및 평가내용

문항유형	평가내용
■ 진료문항(Patient encounter)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 수기문항(Procedure skills)	기본 기술적 수기

다. 문제수, 배점 및 시험시간

구분	문제수	배점		시험시간(1문제 당)
		1문제당	만점	
진료문항	6문제	100점	600점	10분(사이시험 5분 별도)
수기문항	6문제	100점	600점	5분
계	12문제		1,200점	

※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고시(제2020-121호, 2020.6.16. 개정) 제6조에서 모든 문제의 만점을 100점으로 정함에 따라 수기문항 배점을 50점에서 100점으로 함

라. 시험시간표

응시자는 반드시 본인이 응시하여야 하는 배정된 시험일의 해당 사이클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시험시간표 참조)'까지 의사 실기시험장에 입장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분	사이클	응시인원 (1일 기준)	응시자 입장 시작시간*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	시험시간
월요일 ~ 토요일	1	144명	07:15 ~	07:45	08:30 ~ 11:07
	2		10:00 ~	10:30	11:15 ~ 13:52
	3		13:35 ~	14:05	14:50 ~ 17:27
	4		16:20 ~	16:50	17:35 ~ 20:12

* 한파 및 코로나 19 감염으로부터 응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시자 입장 시작시간' 신설

**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은 응시자가 의사 실기시험장(국시원 본관 건물 1층 현관)에 입장을 완료해야 하는 시간임

5 합격자 결정(발표) 및 면허증 교부신청

가. 합격자 결정(「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3] 참조)

의사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함

나. 합격자 발표 및 이의제기

-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21. 2. 22.(월) 08:00
- 합격자 발표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 휴대폰 문자(SMS)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를 기재한 자에 한함)
- 이의제기 기간 : 2021. 2. 26.(금) 18:00까지
 - 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발표일 포함, 18시까지) 이의제기 가능

다. 면허증 교부신청

- 의사 실기시험 및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여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는 면허교부 신청을 하여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합니다.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까지 아래 준비물을 가지고 의사 실기시험장(국시원 본관 1층 현관)에 입장을 완료해야 합니다.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가운, 청진기

단, 응시자대기실에서 응시자 교육 후 실기시험센터 이동시간 전까지는 입장을 허용합니다. 아울러, 시험 전 응시자 교육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고, 시험센터 이동시간 이후 입장은 결시 처리합니다.

응시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재난, 사고, 대중교통 지연 등)로 지참 및 결시한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국시원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국시원에서는 별도 심사위원회에서 검토 후 조치 결과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나. 응시자는 배정된 시험일자 및 사이클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만료일 이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종류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라. 사이시험은 전산입력(컴퓨터 자판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답안을 입력) 방식으로만 운영합니다. 다만, 장애 또는 사고 등으로 전산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자 본인이 자신의 시험 1일 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관리 편의제공대상자 신청 안내'를 참고하여 종이시험지 응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이시험에서 종이시험지 응시자 유의사항 >

- 답안지에 응시번호, 성명 등을 기재 또는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사이시험 답안지를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두 줄을 긋고 재작성 해야 함
- 사이시험 답안지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국시원 제공)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한 경우 해당 사이시험 답안지는 '0점' 처리함

- 마.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전자기기(휴대전화기,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등) 및 개인 휴대물품(손목시계, 장신구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때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바. 시험 종료 타종 후에도 퇴실을 하지 않거나, 사이시험 답안을 계속하여 작성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0점' 처리합니다.
- 사. 시험 종료 후에는 시험장에서 지급된 메모용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항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아. 응시자는 배정된 시험시간(사이클) 중에는 시험장에서 퇴장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부정행위 방법으로 실기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의료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 시험의 응시가 3회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실기작품 및 그 제작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시험기기를 포함한다)를 보고 자신의 답안카드(실기작품 및 시험기기로 작성하는 답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제작)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카드를 제출하는 행위
8.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단,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사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컴퓨터시험 중 시험기기를 외부 유출 또는 시험 종료 후 제출하지 않는 행위
1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차.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의료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합니다.

[응시자 준수사항의 기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

-
5.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7. 실기시험 시행 중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낙서, 그림, 메모 등의 형태로 종이 등에 적거나 신체에 기록하는 행위
 8. 그 밖에 원장이 정한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

- 카.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 타. 시험시간이 출퇴근시간 등과 중복되어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파. 시험문항, 채점표, 채점기준표 및 응시 동영상(실기시험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목적의 촬영 영상)은 시험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이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 실기시험 문항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저작권은 한국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있음- 의사 실기시험 문항 일부 또는 전부를 블로그, 카페 등에 복원하여 게재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 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실기시험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비 응시자 안내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마침

<첨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의사 실기시험 당일 시험관계자 외 외부인의 실기시험센터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아울러, 실기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실기시험 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응시자 준비물품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응시표, 신분증, 가운	응시표, 신분증, 가운, 청진기	-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를 위해 응시자 준비물품 중 청진기 추가 * 단, 녹음 기능이 있는 청진기는 사용 불가

* 펜라이트, 필기구는 종전과 동일하게 국시원에서 제공

2. 응시자 준수사항 등

가.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 응시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후 실기시험센터에 입실하여야 하고, 퇴실 시까지 벗지 않아야 합니다.
 - * 단, 신분 확인 시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진행을 위해 별도의 마스크(KF94)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공정한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마스크 미착용, 지급한 마스크 외의 것 착용, 올바르게 착용 등)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표준화환자의 마스크를 벗기거나 마스크 위로 접촉하는 신체진찰을 원칙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단, 이러한 신체진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신체진찰명)을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제대로 시행한 것으로 채점합니다.
- 실기시험센터 곳곳에 마련해둔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 입실 전 대기 복도', '시험실 입실 직후', '시험실 퇴실 전'에는 반드시 실시

나. 체온 측정 및 유증상자 조치 사항

- 실기시험센터 입구에서는 응시자를 비롯한 모든 시험관계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발열체크를 실시합니다.
 - * 발열 체크 등의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실기시험센터에 일찍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측정 체온이 37.5°C 이상일 경우 실기시험센터 입실이 제한되고, <유증상자 대기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 37.5°C 이상인 응시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점검을 위한 문진표>를 작성하고, 시차를 두고 고막체온계를 사용하여 체온을 재측정하게 됩니다.
- 재측정 결과 37.5°C 이상인 응시자는 당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선별진료소로 이동하게 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시험일을 지정하여 응시하게 됩니다.

다.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조치

- 실기시험센터 출입이 불가능한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는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를 제출하여 시험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완치 판정 서류 확인 후, 별도 시험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 * 시험기간 중 완치자나 자가격리해제자는 시험기간 내 시험일을 재배정 받아 응시
 - * 시험기간 종료일 후 2주 이내에 완치나 자가격리해제된 자에 한해서는 그 다음주 별도 시험일에 응시

라. 시험도중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한 경우

- 시험도중 코로나19 주요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7.5°C 이상일 경우 유증상자 대기실로 이동하여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합니다.
 - * 당일 시험은 무효이고, 검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시험일을 지정하여 응시하게 됩니다.

마. 실기시험센터 방역

- 실기시험센터 방역을 위해 시험시행 전후 전문 업체를 통해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시원 실기시험1부(02-2087-8914)로 연락바랍니다.